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성 북 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안 번호	556
----------	-----

제출년월 : 2026년 2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장애인 가족의 종합적·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6.3.31.)에 따라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사단법인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2(승인 및 동의)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고(現 위탁기관)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북구 종암로 129, 305호 (종암동)	115㎡	2020.3.	사단법인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위탁기간 2023.4.1. ~ 2026.3.31.)

나. 위탁기간 : 2026. 4. 1. ~ 2029. 3. 31.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방법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의결에 따른 재계약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등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 우리구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